

瑞山市地域保健醫療審議委員會設置 및 運用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7. 9.12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1997. 9.19
- 라. 上程日字 : 1997. 9.27, 11.1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保健課長 柳瑩東)

가. 提案理由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정한 건강생활 실천협회의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 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함 (안 제2조).

-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함 (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경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규정함 (안 제4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시행령상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과 성격은 상의하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등을 위하여 통합운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조례안 제명중 운용을 운영으로 표기하여야 보다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사료되며,
 - 운영(運營) : 어떤일이나 조직 따위를 운용하여 경영함
 - 운용(運用) : 돈이나 물건, 제도 따위의 기능을 부리어 씀

※ 기금(재원)과 관련된 조례는 운용으로 표기, 도의 준칙안도 운영으로 되어 있음
- 조례안 제10조의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 부칙 제2항, 제3항의 폐지조례 제명을 서산시건강생활 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로 표기하여야 하며 (조례의 제명은 고유명사 임)
-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종전조례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위원은 본조례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것으로 하는 조항은 위원수, 임기등으로 인하여 효용성이 없으며,
 - 제정조례안
 - 위원수 : 20인 이내
 -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위원중호선
 - 임 기 : 2년(위촉된 날로부터)
 - 폐지 조례
 - 위원수 : 10인이내
 - 회 장 : 부시장, 부회장 : 보건소장
 - 임 기 : 2년(조례안 공포일로부터 2년)
- 경과조치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없음

5. 討 論 : 없음

6. 少數意見 : 없음

7. 審査結果 : 수정 가결

※ 첨부 : 수정안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명칭 및 제1조, 제6조 제1항, 제11조중 "운용"을 "운영"으로 한다.

제1조중 "서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잔여기간"을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중 "개최"를 "개회"로 한다.

부칙 제2항중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 관한조례"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대 비 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u>설치및운영</u> <u>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서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설치</u>하고 이를 <u>효율적으로 관리운영</u>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여기간</u>으로 한다.</p> <p>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u>운영한다</u>.</p> <p>② (생략)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최</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생략) ②(다른 조례의 폐지) <u>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u>는 이를 폐지한다.</p> <p>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u>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u>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p> | <p>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u>설치및운영</u> <u>조례안</u></p> <p>제1조(목적) ----- ----- ----- ----- <u>서산시지역보건</u> <u>의료심의위원회</u> ----- ----- <u>운영</u> ----- -----</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잔임기간</u> -----</p> <p>제6조(회의) ① ----- ----- <u>운영</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개</u> <u>의</u> -----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현행과 같음) ②(다른 조례의 폐지) <u>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u> ----- -----</p> <p>③ (삭제)</p> |

| | |
|-------|--------------------|
| 제안번호 | 제 152 호 |
| 의결년월일 | 1997. . . (제 회) |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 |
|-------|-------------|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 제출년월일 | 1997. 9.12. |

서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제15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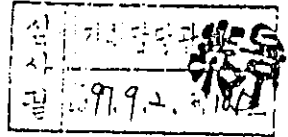
제출년월일 : 1997. 9. 12.
제출자 : 서산시장

□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 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나.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규정함 (안 제2조).
- 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함 (안 제3조).
-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경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규정함 (안 제4조).
- 마.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토록 규정함 (안 제7조).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 주민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시의회 의원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9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